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 정 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23-96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5.

발 의 자 : 정정희, 김희동, 정재봉, 김순옥, 최세진, 최동철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,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강서구의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나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8조제3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조, 제76조제2항, 제49조제2항

나. 협조부서 : 기획예산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8. ~ 9. 1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,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강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”을 “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후단 중 “선출한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5.14)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사 업

제2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4조 앞에 “제4장 사 업”을 삭제한다.

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.

제18조(종전의 제24조의2)제1항 및 같은 조(종전의 제24조의2)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5.14)”를 각각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5.14)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재 무 회 계

제26조 앞에 “제5장 재 무 회 계”를 삭제한다.

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,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.

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감 독

제34조 앞에 “제6장 감 독”을 삭제한다.

제6장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.

제28조(종전의 제35조)제1항 중 “업무상황을설명하는”을 “업무상황을 설명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1. 공단 전체 사업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,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

2. 공단의 개별 사업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, 예산편성 및

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

3. 그 밖에 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6조 앞에 “제7장 보 칙”을 삭제한다.

제36조를 제29조로 한다.

제37조를 제30조로 한다.

제38조를 제31조로 한다.

제39조를 제32조로 한다.

제40조를 제33조로 한다.

제41조를 제34조로 한다.

제31조(종전의 제38조) 중 “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”를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의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“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,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,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① (생 략)	제3조(사무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지사를 둘 수 있다.	② ----------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----------.
제12조(이사회) ① ~ ③ (생 략)	제12조(이사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장이 소집하고 제3항 전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5.14.)	④ ---------- 선출한다.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3장 사 업

제21조의2(삭제 2010. 2.24)	<삭 제>
제4장 사 업	<삭 제>
제24조 (생 략)	제17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
제24조의2(타당성 조사) ① 구청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 5.14.)	제18조(타당성 조사) ① ----------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5.14.)	② ---------- 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(신설 2010. 2.24, 개정 2014.5.14.)	③ ---------- 있다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제5장 재 무 회 계	<삭 제>
<신 설>	제4장 재 무 회 계
제26조 ~ 제33조 (생 략)	제19조 ~ 제26조 (현행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)
제6장 감 독	<삭 제>

<신 설>	제5장 감 독
제34조 (생 략)	제27조 (현행 제34조와 같음)
제35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분기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28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----------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제2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 1. 공단 전체 사업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,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 2. 공단의 개별 사업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,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 3. 그 밖에 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
제7장 보 칙	<삭 제>
<신 설>	제6장 보 칙

제36조·제37조 (생 략)	제29조·제30조 (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)
제38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.	제31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-----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의한다.
제39조 ~ 제41조 (생 략)	제32조 ~ 제34조 (현행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와 같음)

붙임 관계법령 발췌서

□「지방공기업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거나,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76조(설립·운영) 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4, 제64조의5, 제65조, 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으로, “사장”은 “이사장”으로, “사채”는 “공단채”로 본다.

제49조(설립)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